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26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위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지침 수립 및 수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지휘·감독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고조사 업무 수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원위원회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및 위원회 개최·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의2, 제16조의2)

나.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별표 2, 별표 4, 별지 제24호)

- 다. 사고조사 범위 및 조사기법 등 사고조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30조, 제33조, 제38조, 별표 13)
- 라.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가 간 협의기간 단축(안 제44조)
- 마. 연구·교육기관 지정 절차 보완 및 기술자료 접근·관리 관련 조항 신설(안 제50조, 제50조의2, 별지 제17호 및 제18호)
- 바.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민간위탁 절차 등 신설(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04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전화 : 044) 201-5428
 - 팩스 : 044) 868-2406
 - 전자우편 : kanglia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전화 044-201-5428, 팩스 044-868-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